

의안번호	2211195
의 퇴 인	이용우의원
회 답 일	2025.7.4.
추 계 번호	25B352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2항)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¹⁾ 에 따른 임금 중 최종 3년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의무·재량규정
2	안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제2항)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안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2. 상세 사유

-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 지급 사업²⁾은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등을 지급
 - (재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 (지원대상) 퇴직한 근로자 및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이나³⁾, 재직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평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에 한함⁴⁾
 - (지원금액)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
 -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⁵⁾
 -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⁶⁾

2) 사업코드: 3051-300

3)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5.(생략)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5)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6)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

-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⁷⁾
- (지원유형)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 *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지급
 - *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대지급금
사용자의 회생이나 파산 등이 없더라도 노동청의 체불 임금에 대한 확인이나 민사상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음

□ 개정안은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체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며, 대지급금 상한액과 사업주 변제금에 대한 회수율도 고려하여야 함
- 다만, 현행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체불 규모의 파악에 필요한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의 체불액에 대한 정보만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체불내역에 대한 정보는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초과한 체불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이 곤란하다고 밝힘
 - 따라서 현행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체불 임금이 있는 근로자의 수, 해당 근로자별 총 체불 기간 및 월별 체불액 등에 대해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7)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현시점에서 장래의 경기변동 및 임금체불 발생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